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)
- 나.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 등)
- 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(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)
- 라.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(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(수탁자) 리스크관리 고도화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6/1/26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5.12.29)으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 서식(별책서식1 제17호) 변경에 따라,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<별지 제1호>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
 - <별지 제1호>의 ‘II. 사업의 내용’ 중 순자본비율 I (개별)에 관한 작성 요령 추가
 - ‘III.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’ 중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5.12.29) <별표1>에 따라 기재

나.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6/1/15 개정 · 2026/8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,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강화를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(제25조)

-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□ 신용등급평가위원회 운영 강화(제26조)

-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함
-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,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

□ 신용평가 사후관리가 중단될 경우 공시 의무 신설(제27조)

-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함

□ 평가·영업조직 간 정보·인사 교류 제한 강화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(제31조)

-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함
 -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함

□ 신용평가자료의 보관기간 연장(제51조)

- 신용평가자료 보관기관을 최소 3년 동안에서 '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'으로 개정

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(2026/1/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지배구조법 개정(2024.7) 사항 반영 및 양성평등 임금공시 확산을 위한 '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'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 반영

- 이사회 내부통제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,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등 이사회 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(p 9~10)

□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기술부분 신설(p 92~95)

□ 직급,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 신설(p 122)

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

2. 보수체계

나. 보수 세부사항

3) 직급,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(임직원 1인당 평균액)

(단위 : 억원)

구분	직원	직원						임직원 평균 보수
		OO			OO			
		근속연수 0년 미만	근속연수 0~0년	근속연수 0년 이상	근속연수 0년 미만	근속연수 0~0년	근속연수 0년 이상	
전년도 (OOOO년)	남성							
	여성							
	전체							
당해년도 (OOOO년)	남성							
	여성							
	전체							

주1) 개별 항목은 직급, 근속연수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(보수총액/임직원수)을 기재한다.

라.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(2026/1/15 제정 · 2026/2/18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금융디지털화,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제3자(수탁사)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함
 -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5.3.12, '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' 마련 추진) 후속 조치

2) 주요 내용

-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·시행·유지(제4조)
 - 통합 체계 구축 시 회사 규모, 업권별 리스크요인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
- 이사회등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규정(제5조, 제6조)
 -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주체로서 이사회등의 최종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
 -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·시행·유지하고 관련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
- 중점관리 위탁계약 선정, 업무연속성 계획, 기록 문서화 등을 통한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(제7조~제9조)
 - 제3자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 위탁계약으로 선정하고 강화된 리스크관리 수행
 - 재난 발생, 수탁자의 업무중단 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(BCP)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 점검
 -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, 위탁 관련 의사결정사항, 실사 결과 등 주요사안은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
- 위탁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사항 규정(제10조~제13조)
 - (계약체결 전) 위탁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 평가 통해 리스크가 감내 가능한 수준 이내인 것을 확인
 -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한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제공 역량 검증 가능
 - (계약체결) 업무수행 범위, 보안요구사항, 위탁자의 권한 및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
 - (계약이행 모니터링) 리스크 수준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중대한 리스크 징후 발견 시 경영진에 보고 및 조치
 -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리스크평가 주기 단축 등 관리 강화
 - (계약종료)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소비자 피해방지 등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발생가능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종료 후에도 점검 및 관리 의무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